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호
----------	------

제출연월일 2005. 6. 9.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6960호, 2003. 7. 30 공포, 2005. 7. 3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구성 인원 : 10인이상 20인이하
- 위원 자격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 구성 : 10인이상 20인이하

- 위원 자격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나.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3. 15 ~ 2005. 4. 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와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사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및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 국·소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소 주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지급)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등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

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  
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20명(민간인 17명, 공무원 3명)
-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 20명(민간인 10명, 공무원 10명)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지 급 기 준	비 고
<b>총 계</b>	<b>43,945</b>		
	소 계	39,145	
인 건 비	상근 유급직원	8,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부임 24,300원 × 260일 = 6,318천원</li> <li>○ 국민연금 등 4대보험 6,318,000원 × 8.405% = 532천원</li> <li>○ 주차수당 24,300원 × 4일 × 10월 = 972천원</li> <li>○ 월차수당 24,300원 × 1일 × 10월 = 243천원</li> </ul>
	회의수당	3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협의체 70,000원 × 17명 × 12월 = 14,280천원</li> <li>○ 실무협의체 70,000원 × 10명 × 12월 × 2회 = 16,800천원</li> </ul>
물건비	일반운영비	4,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용비 200,000원 × 12월 = 2,400천원</li> <li>○ 여비 등 업무추진경비 200,000원 × 12월 = 2,400천원</li> </ul>